

용인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제정 2023. 8. 25 훈령 제52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용인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
2. 민·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
3.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
4.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5.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교육·문화·청소년 및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 업무 담당 국장
2. 안전문화 업무 담당 부서장
3. 용인동부경찰서 및 용인서부경찰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 부서장
4. 용인소방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 부서장
5. 용인교육지원청 재난안전 관련 업무 부서장
6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가.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

나.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과 관련있는 기관·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

다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) ① 협의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- ③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, 재난안전, 사회안전 등으로 구분하고,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고,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